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59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박지혜 · 이재관 · 문금주
김 윤 · 박해철 · 박지원
허성무 · 이훈기 · 양부남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

제17조의3 중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2항제2호·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제5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u> <u>것</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벌칙) <u>제5조제2항제2호</u> 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 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7조의3(벌칙) <u>제5조제2항제2호</u> <u>· 제5호</u> ----- ----- ----- -----.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 <u>제5조제1항 또 는 제2항제4호</u> 를 위반하여 광 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3. ----- <u>제5조제1항 또 는 제2항제4호 · 제5호의2</u> ---

자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